

화재 발견시간은 화인조사의 중요한 단서

송 재 철

〈치안본부 형사부 경감〉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 현장과 같이 전문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발견시간의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발견경위와 연계시켜 조사할 경우가 많다. 직업적으로 시간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근접한 발견시간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견자가 무엇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TV시청이나 라디오등의 청취시간 또는 행상이 지나간 소리와 걸부시킨다든지, 누구와 만나고 헤어졌다든지 하여 제3의 행적으로 부터 귀납적으로 추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불의 상태란 가연물 조건에 따라서 착화의 위험이 달라지고 예열상태나 주위, 기상여건등에 따라서 현재도 산화를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착화를 일시 머물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발견시간이나 장소,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질의와 문답이 수월치만은 않다.

자기집이 타서 주저앉았어도 내 집이, 내방이 이렇게 작지는 않았는데……, 하는 경우가 많다. 입체적으로 느껴온 크기와 타서 주저앉은 평면적 크기가 훨씬 다르게 느껴지는 것임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또 야간의 경우 발견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거리라든가 화재의 규모등이 시야의 원근판별 혼란, 시야장애, 흥분상태 등으로 대화의 과정에서 표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도심 한복판 일식집에서 사람이 6명이나 소사한 화재사건이 늦겨울 새벽에 발생하였다. 목조 2층 건물을 개조하여 1층은 흘, 2층은 룸으로 꾸몄는데 창문없이 내장하여 2층에서 잠자던 종업원과 그 친구들 6명이 모두 사망한 것이다. 2층부는 모두 소락하였고 1층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였지만 1층홀 내부에도 일부 화염이 진행되던 흔적이 있어 발화부가 2층의 총계 시작부 분임은 연소의 상승성을 고려하면 즉각 판단이 가능한 현장이었으나 최초발견자로 나타난 길

건너 불고기집 주인은 화염이 1층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에 사람이 있었을 텐데 문을 열어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에서 잠겼는지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것이며, 최초 입장 소방관 역시 같은 대답이다. 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계속일 뿐 구체성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門)의 상태나 상황, 내부변화나 동태에 관한 첨언이 임의 진술임에도 강조되지 않음은 최초발견자로서의 진술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술내용이 현장상황과 차이가 있어 출입문의 시정상태를 발굴조사하여 작은 빗장걸이(latch) 3개중 열린 상태의 2개를 발굴해 낸 것이다.

출입문은 화재전날 1층에 있던 사람이 모두 걸었고 화재시 1층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뒷문으로 대피해 살아났다고 하는데 2층 사람만 모두 타죽었다면 빗장은 걸지 않았던지 누군가가 열고 나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체의 숫자가 잘못

이 아닐까? 병원 영안실의 사체 수를 다시 확인하여 보니 5명인 것이다. 자리 올라간 사람은 6명인데 5명만 소사체로 영안실에서 확인되었다면 1명은 완소되어 채가 되었단 말인가? 그래서 사체수는 6명에서 5명으로 줄고 1명은 문제의 인물로 남게 된 것이다. 사망자가 6명이라고 알려진 것은 잠자리 올라간 사람이 6명이고 “나는 살아있오”라고 나타난 사람이 없어 6명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영안실에서 확인된 5명외의 1명은 완전소락한 2층부의 소락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찾고자 하였으나 발견치 못했다. 한 사람만이 살아 나왔다면 불이 붙고 있는 총계를 뚫고 내려와 빗장고리 3개를 여유 있게 열고 양전하게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불속을 뛰쳐나와 살아 나왔더라도 아무런 소리 소문도 없이 자기 고향(?)으로 잠적해 버릴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자가 바로 방화범인이기에 추적 검거되었지만 사체 숫자와 사인 및 화인과는 이렇게 관계

되는 수도 있다. 이는 사체와 현장관계를 이야기할 기회에 계속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최초발견 상황 청취에 있어서도 발견자의 발견위치, 동기, 상황청취의 선택을 현장상황에 맞추어 신중히 하지 않으면 오판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화재의 경과시간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같은 경우 혼촉과 동시에 폭발, 발화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분, 수시간, 수년까지도 걸리는 것이 있어서 발견시간과 소훼물건의 물성등 상관관계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담배불을 끄지 않은 채 휴지통에 버렸을 때 100% 화재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니며 단 한번 또는 그보다 적은 확률이라도 발화가 될 수 있다면 담배불을 끄지 않은 채 휴지통에 버렸을 때는 일단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담배불에 의한 착화, 발화위험을 부정할 수 없을진대 이에 따른 예방대책등이 강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 착화되었다 하더라도 발염

까지의 시간적 경과 역시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발염의 시간차는 담배불과 가연물의 조건, 휴지가 담긴 휴지통의 공기 소통여건등이 요소가 되는 것처럼 자연발화나 저온축열에 의한 발화위험 같은 것은 경과시간차가 더욱 크다.

미지근한 물에 인을 용해시킨 뒤 수면에 형성되는 기름층에 밀가루를 섞어 반죽하여 만들어진 쥐약을 창가에 놓아두고 잊어버린 것이 약 12년(1921년에 놓아둔 것이 1933년 7월에 밝화)이나 지나서 액상의 약제가 승빌한 후 남은 인이 자연발화하여 밑에 있던 석유에 인화한 사례가 있었다고 슈테르만과 오로넬의 “수사심리학” 문헌에도 소개된 것이 있거니와, 온돌하방복이 화덕열에 장기간에 걸쳐 전도가열되어 혼소끝에 발화한 사례는 온돌축조시부터 착화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간 발염의 시간적 경과를 갖는 비근한 화재사례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화재사례들은 연소가 계속되어는 화재에 이르기 전에 발견 소화됨으로써 사례로 소개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의 발견시간이란 대체로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접수된 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이 통례이나 조사시는 조기발견사 등을 상대로 발생시간에 가장 접근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화재진행 경로와 경과를 기술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